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998. 11. 7.

행정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8년 11월 3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1998년 11월 4일 회부

다. 상 정 일 자 : 제60회 임시회 제5차 행정위원회('98. 11. 6)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가. 제안이유

- 제2의 건국과 관련된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기능(안 제2조)
  -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수립·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 심의
- 구성 및 임기(안 제3조, 제4조)
  - 위원장 포함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 위 원 : 구청장이 위촉
    - 1) 구의회 부의장,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 2) 부구청장, 남부교육청 학무국장, 관할 경찰서 경무과장과 관련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등
  - 고 문 : 구청장이 위촉 가능
    - 1) 구의회 의장, 교육장, 경찰서장 등
  - 임 기 :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 상임위원회(안 제8조)
  - 기 능 :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처리
  - 구 성 : 상임위원장 1인 포함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의견청취(안 제10조)
  - 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시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가능
- 수당(안 제11조)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 지급

###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유제한)

동 조례안의 제정은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15903호 '98.10.1) 제10조에 의거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에 의거 우리구에서도 국정과제를 생활현장에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4. 심사결과 : 원안의결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제2의견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24
----------	----

제출년월일 : 1998. 11. .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 1. 제안이유

- 제2의 건국과 관련된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 가. 기능(안 제2조)

-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수립·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 심의

### 나. 구성 및 임기(안 제3조, 제4조)

- (1) 위원장 포함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2) 위원장 :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 (3) 위 원 : 구청장이 위촉
  - (가) 구의회 부의장,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 (나) 부구청장, 남부교육청 학무국장, 관할 경찰서 경무과장과 관련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등
- (4) 고 문 : 구청장이 위촉 가능
  - 구의회 의장, 교육장, 경찰서장 등
- (5) 임 기 :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 다. 상임위원회(안 제8조)

- (1) 기 능 :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처리
- (2) 구 성 : 상임위원장 1인 포함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라. 의견청취(안 제10조)

- 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시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가능

### 마. 수당(안 제11조)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 지급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15903호 '98.10.1) 제10조

- ※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등) 제2의 건국을 위한 국정과제를 생활현장에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및 추진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합의되었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서울특별시에서 확정된 개혁과제중 구에서 실천하여야 할 사항
4.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국민운동의 지원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기타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영등포구의회 부의장,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2. 부구청장, 남부교육청 학무국장, 관할 경찰서 경무과장과 제2의 건국추진과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
3.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 및 국민운동 추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위원회에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고문을 둘 수 있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제3조제4항에 의한 고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영등포구행정관리국장이 되고, 서기는 영등포구행정관리국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된다.

제8조(상임위원회) ①위원회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지명한다.

④상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위원회의 서기가 겸한다.

제9조(회의록) 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